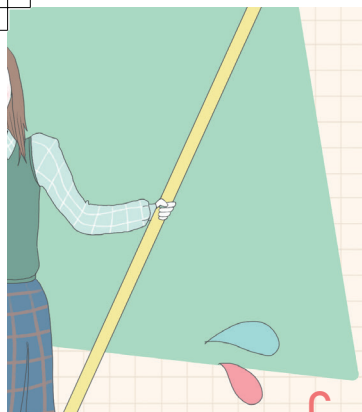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CONTENTS

01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 04

02 연소근로자 보호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유의사항 / 04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취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05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나요? / 07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해야하나요? / 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09
임금 청구권이 있나요? / 10
근로시간이 성인과 똑같은가요? / 10
늦게까지 일할 수 있나요? / 11
갱내에서 일할 수 있나요? / 12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3
휴일이 있나요? / 13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14



04 참고사항

연소근로자보호 관련법 (근로기준법) / 15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18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상 사용금지 업종 / 19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2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22



01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헌법」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의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근로시간,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취직인허 등의 규정을 통해 특별보호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연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입 • 고용금지업소 등을 규정하고, 「직업안정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2 연소근로자 보호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유의사항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사항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취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에 한해 허용)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이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발급가능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취직인허를 받고자 하면 학교장(학생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지방관서에 신청(시행령 제 35조 제3항) 지방관서의 장은 취직인허증 발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합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① 유해,위험직종 아닌 경미한 작업
  ② 생명,건강,복지에 위험,유해하지 않은 업무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동의와 학교장 의견 명기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 취직인허증에는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의 근로 조건이 기재되어야 하며,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 인허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거나 인허 받은 직종 외의 업무 또는 유해 · 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킨 경우 취직인허가 취소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나요?

-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시행령 제40조)

01 고압, 잠수작업
02 운전, 조종면허 취득 제한업무
03 청소년 고용 • 출입 금지직종 • 업종*
04 교도소 • 정신병원 업무
05 소각 • 도살 업무
06 유류 취급업무(주유 제외)
07 2-브로모프로판 취급업무**
0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고시 업무

*청소년 (19세 미만자) 고용 • 출입 금지직종이나 업종
[고용 • 출입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전화방 등
[고용 금지] 숙박업(콘도, 펜션 제외), 이용업(남자청소년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2-브로모프로판 (솔벤트 5200)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
95년 8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노동자 28명에게 생리중단 • 빈혈 •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됨 (남성의 경우는 저 정자증 유발)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해야하나요?

- 연소자의 취업을 감독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로써 연소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연령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후견인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정후견인이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연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권자 등의 근로계약 대리권을 제한하였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① **연령 확인**(15세 미만자 취직인허증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② **당사자와 근로 계약**(친권자 등이 대리할 수 없으나 동의는 받아야 함)

③ **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④ **임금지급**(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임금 청구권이 있나요?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임금지급은 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법 제43조)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나 임금청구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성인과 똑같은가요?

- 연소자의 건강보호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취직인허 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결정 (15세 미만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늦게까지 일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한정되며, 회사의 약정 휴일 (인가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근로나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 · 숙직은 금지되는 야간,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01254-795, 1993.5.1)

  - 18세 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인가서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를 할 수 있는 기준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2.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갱내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갱내는 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 속을 파들어 간 굴을 의미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 땅 표면에서부터 시작하는 통로로서 공공도로(公共道路)와 같은 정도의 안전 · 위생이 보장되고 갱내 근로자 이외의 자도 통행할 수 있는 지하 통로는 갱내 근로로 볼 수 없으며 지하 통로가 우연히 땅 표면으로 나오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갱내로 봄

  –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 · 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예외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이 있더라도 금지됩니다.

- 보건 · 의료, 보도 ·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일시적인 갱내근로 허용업무(시행령 제42조)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업무

② 신문 · 출판 ·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 취재업무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④ 관리 · 감독업무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업무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연소근로자,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다만, 수습으로 근로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적용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201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휴일이 있나요?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 주휴일은 주로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 가능합니다.

03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근로기준법)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연소근로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합니다.

  – 미가입 시 에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참고사항

참고1

연소근로자보호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 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 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참고사항



제66조(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벌칙(제116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①, ③항 위반 시 벌칙(제114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대표 협의 위반(제70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 의료, 보도 ·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참고사항

참고2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연소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10가지**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12년 기준, 시간당 4,58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 (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참고3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상 사용금지 업종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업소 (도덕 · 보건 상 유해 업소)

① 고압 · 잠수작업

②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운전 · 조종업무

③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 · 출입 금지하고 있는 업종**

④ 교도소 · 정신병원

⑤ 소각, 도살

⑥ 유류 취급(단, 주유원은 사용 가능)

⑦ 2-브로모프로판 취급 · 노출 업무

⑧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에서 심위 => 지정 => 고시한 업무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연소근로자 사용금지 위반	사용자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자를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9조 제1항)

04 참고사항

Ⅱ.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1.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및 처벌조항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비디오물 감상실업
④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당해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 무도학원업
⑥ 무도장업
⑦ 사행행위영업
⑧ 전화방
⑨ 화상대화방
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성기구 취급업소 등)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 시 처벌	과 징 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및 처벌조항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 징 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9조 제1항)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참고4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__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개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04 참고사항

참고5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Happy Together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